

##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589
건명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발의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6년 4월 3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6년 4월 28일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6년 4월 30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589
----------	-----

제출년월 : 2026년 4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나.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유형	위치	규모	정원	위탁법인	개소일
					협약기간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호점	일반형	아리랑로 27-3, 2~3층 (동선동)	149㎡	30명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21.09.01
					2021.09.01.~2026.08.31.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0호점	일반형	종암로25길 29, 2층 (종암동)	168㎡	30명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21.09.01
					2021.09.01.~2026.08.31.	

##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10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지원예산 : 연간 200,000천원 내외
  - ※ 인건비(센터장 및 돌봄교사), 운영비 및 급식비 포함

## 3. 관련근거

###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